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

(앞 쪽)

1. 국외특수관계 현황

구 분	①성 명 (법인명)	②소 재 지	③특수관계 현 황	④직·간접 소유비율
양도자			[ ] A관계 [ ] B관계 ※ 작성요령 참고	· 직접 % · 간접 % (계 %)
양수자				

2. 주식발행법인 현황

⑤법 인 명	⑥소 재 지	⑦사업자등록번호	⑧구 분
			(주권상장법인, 기타)

3. 정상가격의 계산 (단위 : 원)

가.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

⑨산출방법명	⑩정상가격 산출내역	⑪정상가격

나.「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

(1) 주권상장법인의 주식

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	⑬일수	⑭1주당 가액(⑫÷⑬)	⑮주식수	⑯평가금액 (⑭×⑮)

(2)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

순손익액 계산	⑰1주당 순손익액	⑱순손익가치환원율	⑲1주당 가액(⑰÷⑱)
순자산액 계산	⑳순자산가액	㉑총발행주식수	㉒1주당 가액(⑳÷㉑)
평가금액 계산	㉓양도주식수	㉔1주당 평가금액	㉕평가금액(㉓×㉔)

4.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(단위 : 원,%)

㉖정상가격(⑪ 또는 ⑯, ㉕)	㉗거래가격	㉘차액(㉖ - ㉗)	㉙비율(㉘÷㉖)

㉚적정여부 판정 : 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㉙비율이 5%이상인지? [ ]예 [ ]아니오

5.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(단위 : 원)

㉛양도가액	㉜양도차익	㉝원천징수세액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√표시 하시기 바랍니다.
   A관계 :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31조 제2항 제1호)
   B관계 :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31조 제2항 제2호)
2. ④직・간접 소유비율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직접・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.
3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에 기재하고,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.
   (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)
4. 「소득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5. '나.「소득세법」 제9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'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.
   (1) 주권상장법인의 주식((2)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)
   -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. 이 경우 같은 목 중 "평가기준일 이전・이후 각 2월"은 각각 "양도일 이전 1개월"로 봅니다.
   (2)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(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・고시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)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포함)
   -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.
6. ⑱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'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'을 적습니다.
7. ㉔1주당 평가금액란은 '순손익가치'와 '순자자산가치'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[{(⑲×3)+(㉒×2)} ÷ 5]을 적습니다. 다만,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% 이상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)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[{(⑲×2)+(㉒×3)} ÷ 5]을 적습니다.
8. ㉖정상가격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⑪의 금액을 적고, 「소득세법」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⑯ 또는 ㉕의 금액에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.
9. ㉚적정여부 판정란에 예 √ 표시되는 경우(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)에는 '㉛양도가액'에 '㉖정상가격'을 적고, 아니오 √ 표시되는 경우에는 '㉛양도가액'에 '㉗거래가격'을 적습니다.
10. ㉜양도차익란은 「법인세법」 제98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'㉛ 양도가액'에서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9조제3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11. ㉝원천징수세액란은 ㉛양도가액 × 10%를 적되,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㉛양도가액 × 10%와 ㉜양도차익× 20%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